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11. 17.
발 의 자	김근한 의원 외 20명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근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7.

발 의 자 : 김근한·김민성·김영길·김영태
김원섭·김재우·김정도·김춘남
박교상·박세채·소진혁·양진오
이명희·이상호·이정희·이지연
장미경·장세구·정지원·추은희
허민근 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기업체, 근로자, 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유입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업체, 근로자, 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나.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다. 인구유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라. 인구정책 관련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7조, 제32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부서검토: 인구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인구정책사업)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
2. 일·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
3.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
4. 노인의 여가·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
5. 기업체,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
6.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, 정착 유도 지원
7. 인구 유출 방지,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제10조제1항 중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”를 “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사람”을 “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

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6조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제6조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·단체 대표 및 관계자
3.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인구, 경제, 복지, 도시·환경, 보건 등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

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,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·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 유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·기관·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인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기업·법인·단체·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, 절차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21조(중전의 제19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제7조, 제8조 및 제18조”를 “이 조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인구정책사업) ① 시장은 <u>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</u> 2. <u>일·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</u> 3. <u>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</u> 4. <u>노인의 여가·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</u> 5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</u> <p>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</p>	<p>제6조(인구정책사업) 시장은 <u>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</u> 2. <u>일·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</u> 3. <u>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</u> 4. <u>노인의 여가·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</u> 5. <u>기업체,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</u> 6. <u>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, 정착 유도 지원</u> 7. <u>인구 유출 방지,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</u> 8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</u> 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구성</p>

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
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
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
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
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
며,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경제산업국장,
사회복지국장, 도시건설국장,
환경교통국장, 구미보건소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
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
사람

가. 인구정책분야에 학식과
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결혼·임신·출산·양육
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
부한 기관·단체 대표 및
관계자

<신설>

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다음 -----

----- 사람 중에 시장
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-----
-----.

1. 제6조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
이 풍부한 사람

2. 제6조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
한 기관·단체 대표 및 관계
자

3.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
우 인구, 경제, 복지, 도시·환
경, 보건 등 관련 분야 근무
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

<신 설>

제19조(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·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 유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·기관·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0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인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기업·법인·단체·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, 절차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9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제7조, 제8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

제21조(사무의 위탁) ① -- 이 조례-----

구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
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
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0조·제21조 (생략)
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
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
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
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다.

제22조·제23조 (현행 제20조 및
제21조와 같음)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인구청년과

조 례 명	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▪ 지방자치법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기업체, 근로자, 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 반영한 인구정책 지원 근거 마련▪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▪ 인구유입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▪ 보조금, 사무위탁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인구, 기업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,▪ 생활인구 및 인구시책 종합 안내를 위한 지원기관(웰컴센터) 구축 근거 마련으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인구 정책 추진과,▪ 경북도에서 계획중인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지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전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: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○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○ 문 제 점: 인구정책의 범위와 분야가 방대함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력이 필요하며, 인구 정책 흐름에 걸맞은 관내 기관 및 경북도,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함	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(안 제6조, 제19조)에 따라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- 인구정책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소요 재정의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 임정희(☎054-480-2502)

관계법령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(인구정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2조(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3. (생략)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가.~라. (생략)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~거. (생략)

5.~6. (생략)